군산우체국 공고 2024-32호

2024년도 제8회 군산우체국 상시계약집배원 채용 공고

군산우체국, 군산대야우체국, 군산산업단지우체국에서 우편물 집배 관련 업무를 담당할 상시계약집배원 채용계획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4. 7. 26.

군산우체국장

1. 채용 직종 및 인원

채용직종	인 원	응시권역 (근무예정우체국)	담당업무	비고
상시계약집배원	2명	군산우체국	○통상 및 소포배달업무 ○기타 부대업무	
상시계약집배원	2명	군산대야우체국	○통상 및 소포배달업무 ○기타 부대업무	
상시계약집배원	2명	군산산업단지우체국	○통상 및 소포배달업무 ○기타 부대업무	

※ 응시권역 중복지원 불가

2. 근무 조건

○ 신분 : 공무직 근로자(비공무원)

* 공무직 근로자의 경우, **최초 3개월 동안 수습기간을 운영하며** 동 기간 중 업무능력 및 직무수행태도 등을 평가하여 계속 근로가 어렵다고 인정되는 경우 수습기간 만료 시 계약이 해지될 수 있음

○ 보 수 : 기본급+수당

- 기본급 : 월급 1,920,740원
- 수당 : 가족수당, 운전수당, 근속수당, 명절수당, 정액급식비 등
- 실적수당 : 연장근로수당, 휴일근로수당, 상시출장여비 등
- 기타 : 사회보험(산재보험, 건강보험, 고용보험, 국민연금) 가입, 맞춤형복지제도, 1년 이상 근무 시 퇴직금 지급 등

○ 근무시간 : 주 5일, 1일 8시간(08:00~17:00)

- 군산우체국 근무자
  - 주 5일(월~금을 기본근무로 하나 국 사정에 의하여 근무일은 변경될 수 있음)
- 군산대야우체국, 군산산업단지우체국 근무자
  - 주 5일(화~토를 기본근무로 하나 국 사정에 의하여 근무일은 변경될 수 있음)
- 휴게시간 : 4시간 근로시 30분이상, 8시간 근로시 1시간 이상
  - ※ 출근,퇴근시간은 우편물 배부 시간을 감안하여 변동 가능
  - ※ 초과근무 시 관련 규정에 따라 초과근무수당 지급

○ 휴가 : 연차유급휴가, 공무유급휴가, 특별유급휴가 등

○ 업무 특성 : 대국민 우편서비스 제공을 위해 고객만족 마인드가 필요하며, 일평균 340여통 이상(최번기 380여통 이상) 통상우편물과 2kg 내외(최고 30kg)의 다량의 소포를 직접 운전·배달하기 위한 체력과 업무처리를 위한 정보화 능력 필요

3. 응시 자격(※최종(면접)시험일 예정일 기준)

가. 응시연령 : 최종시험일 현재 18세 이상, 60세 미만인 자

「**우정사업본부 공무직 및 기간제근로자 관리 규정**」 제62조(근무상한 연령)
- 공무직근로자 등의 근무상한 연령은 60세로 한다.
- 근로자는 근무 상한 연령에 달한 날이 1월에서 6월 사이에 있는 경우에는 6월 30일까지, 7월에서 12월 사이에 있는 경우에는 12월 31일까지 근무할 수 있다.

나. 자격증 : **「제1종 또는 제2종 보통운전면허」와 함께 「제2종 소형면허 또는 제2종 원동기장치자전거면허」를 동시에 소지(최종시험일 현재)하고 자동이륜차 운전이 가능한 자 (참고 : 원동기장치자전거 면허 조건 : J (다륜형)는 이륜차를 운전할 수 없는 한정면허임)**

(**실기시험 응시 전까지 자격증이 없으면 실기시험 응시 불가**)

다. 지역제한 : 공고일(2024.7.26.) 기준 전라북도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자

라. 남자의 경우 병역을 필하였거나 면제된자

마. 응시자격 제한

○ 우정사업조직에서 근무한 경력이 있는 자로서 최종시험일 현재 우편관계법령 또는 계약사항을 위반하여 계약이 해지된 날로부터 3년이 경과하지 아니한 자는 응시불가

○ 결격사유

○ **국가공무원법 제33조(결격사유)**

1. 피성년후견인
2.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자
3.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집행이 끝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 집행이 면제된 날부터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4.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유예 기간이 끝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5.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받은 경우에 그 선고유예 기간 중에 있는 자
6. 법원의 판결 또는 다른 법률에 따라 자격이 상실되거나 정지된 자

6의2.공무원으로 재직기간 중 직무와 관련하여「형법」제355조 및 제356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자로서 3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6의3.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죄를 범한 사람으로서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3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가.「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제2조에 따른 성폭력범죄
나.「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제74조제1항제2호 및 제3호에 규정된 죄
다.「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제2조제2호에 따른 스토킹범죄

6의4. 미성년자에 대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죄를 저질러 파면ㆍ해임되거나 형 또는 치료감호를 선고받아 그 형 또는 치료감호가 확정된 사람(집행유예를 선고받은 후 그 집행유예기간이 경과한 사람을 포함한다)
가.「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제2조에 따른 성폭력범죄
나.「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제2조제2호에 따른 아동ㆍ청소년대상 성범죄

※ 헌법재판소의 헌법불합치 결정(2020헌마1181(2022.11.24.), 2020헌마1605·2022헌마1276(병합)(2023.6.29.))에 따라 2024.6.1.부터 국가공무원법 제33조 제6호의4 나목 중 아동복지법(제14925호) 제17조 제2호 가운데 '아동에게 성적 수치심을 주는 성희롱 등의 성적 학대행위'로 형을 선고받아 그 형이 확정된 사람,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제12329호) 제11조 제5항 가운데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임을 알면서 이를 소지한 죄'로 형을 선고받아 그 형이 확정된 사람은 결격사유에서 제외됩니다.
다만, 이와 관련하여 미성년자에 대한 성폭력범죄 또는 아동·청소년 대상 성범죄를 범한 사람의 경우, 임용결격 기간을 20년으로 하는 내용으로 국가공무원법 정부입법 개정 추진 중인바, 동법 개정시 그에 따라 임용결격 사유에 해당할 경우 임용하지 아니할 수 있습니다.

7. 징계로 파면처분을 받은 때부터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8. 징계로 해임처분을 받은 때부터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전문개정 2008. 3. 28.]

[헌법불합치, 2020헌마1181, 2022.11.24, 국가공무원법(2018. 10. 16. 법률 제15857호로 개정된 것) 제33조 제6호의4 나목 중 아동복지법(2017. 10. 24. 법률 제14925호로 개정된 것) 제17조 제2호 가운데 '아동에게 성적 수치심을 주는 성희롱 등의 성적 학대행위로 형을 선고받아 그 형이 확정된 사람은 국가공무원법 제2조 제2항 제1호의 일반직공무원으로 임용될 수 없도록 한 것'에 관한 부분은 헌법에 합치되지 아니한다. 위 법률조항들은 2024. 5. 31.을 시한으로 입법자가 개정할 때까지 계속 적용된다.]

[헌법불합치, 2020헌마1605, 2022헌마1276(병합), 2023.6.29, 국가공무원법(2018. 10. 16. 법률 제15857호로 개정된 것) 제33조 제6호의4 나목 중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14. 1. 21. 법률 제12329호로 개정되고, 2020. 6. 2. 법률 제1733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1조 제5항 가운데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임을 알면서 이를 소지한 죄로 형을 선고받아 그 형이 확정된 사람은 국가공무원법 제2조 제2항 제1호의 일반직공무원으로 임용될 수 없도록 한 것'에 관한 부분 및 지방공무원법(2018. 10. 16. 법률 제15801호로 개정된 것) 제31조 제6호의4 나목 중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14. 1. 21. 법률 제12329호로 개정되고, 2020. 6. 2. 법률 제1733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1조 제5항 가운데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임을 알면서 이를 소지한 죄로 형을 선고받아 그 형이 확정된 사람은 지방공무원법 제2조 제2항 제1호의 일반직공무원으로 임용될 수 없도록 한 것'에 관한 부분은 모두 헌법에 합치되지 아니한다. 위 법률조항들은 2024. 5. 31.을 시한으로 입법자가 개정할 때까지 계속 적용된다.]

※ 위 각호의 모든 요건을 충족해야 함

4. 우대요건(서류전형 단계에서만 적용됨)

가.「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취업지원 대상자
「장애인 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에 따른 장애인,
「북한 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북한이탈주민,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기초생활 수급자

나. 정보화 관련 자격증 소지자

○ 정보처리기사, 정보처리산업기사, 정보처리기능사, 사무자동화산업기사, 정보기술자격(ITQ), 정보기기운용기능사, 워드프로세서, 컴퓨터활용능력, 인터넷정보관리사(한국정보통신진흥협회 발행 한) 중 1개 이상 소지자

※ 취업지원 대상자 등은 '가' 항의 요건을 갖춘자에 한하며 '정보화자격증'과 '취업지원대상자' 등의 심사항목에 2개이상의 자격이 있는 경우 각각 1개의 자격만을 반영함.

다. 근무경력

○ 집배 업무에 6개월 이상 근무한 경력이 있는 자
○ 우체국소포원에 1년 이상 근무한 경력이 있는 자
○ 재택 · 통상 · 소포위탁배달원으로 2년 이상 근무한 경력이 있는 자 (민간택배사 배달 근무경력자 포함, 다량 화물 운송 제외)

※ 경력증명서 제출자중 서류전형 합격자는 4대보험(고용보험 등)중 1개의 자격득실 내역서를 제출할 수 있어야함

※ 우대요건에 해당하는 경력의 계산,자격 취득 기준일은 원서접수 마감일 기준으로 판단하며, 경력은 응시자격요건을 충족한 이후의 경력을 인정

5. 시험 방법

시험단계 / 채용분야	제1차 시험	제2차 시험	제3차 시험
상시계약집배원	서류전형	실기	면접시험

가. 제 1차 시험 : 서류전형

○ 응시자의 자격요건, 결격사유 등을 심사하여 적격 · 부적격 여부만을 판단

○ 응시인원이 채용예정 각 모집구분(응시권역) 인원의 5배수 초과일 경우 적극적 서류전형 심사기준에 의해 5배수로 합격자를 결정(동점자 발생 시 모두 합격)

- 서류전형 심사기준

심사항목 / 배점	자격요건 만족도	직무관련 경력	무사고 경력	자기소개 충실성실성	정보화 자격증	취업지원 대상자 등
100점	15점	30점	30점	10점	10점	5점

나. 제2차 시험 : 실기시험

ㅇ 서류전형 합격자를 대상으로 직무 수행에 필요한 체력 검정

- 체력 검정(3종목) : 윗몸 일으키기, 팔굽혀 펴기, 소포상자이동하기

- 검정기준표 : 붙임참조

- 체력 검정 면제 :「국민체력 100」 인증서*(3등급 이상) 제출자

*** 국민체력100 체력인증센터에서 체력측정 후 발급하는 인증서(무료)로 인증일이 공고일기준 최근 6개월 이내인 인증서(3등급이상)에 한함**

다. 제3차 시험 : 면접시험

ㅇ 당해 직무수행에 필요한 능력, 적격성 등을 종합적으로 평가

※ 평가요소 : 공무수행에 필요한 정신자세, 전문지식과 그 응용능력, 의사표현의 정확성과 논리성, 예의·품행과 성실성, 창의력·의지력과 발전 가능성 등

※ 실기 시험에서 탈락할 경우 면접 시험에 응시할 수 없음

ㅇ (최종합격자 결정) 제3차 시험에 합격한 자 중 면접점수 상위 순위자부터 채용목표 인원 순으로 합격자 결정

- 면접위원의 전체 평정성적('상', '중', '하' 의 개수)을 집계하여 '중', '하' 의 개수와 상관없이 '상' 의 개수가 많은 순으로 합격자 결정

- '상' 의 개수가 동일한 경우 '중' 의 개수가 많은 순으로 함

※ 선발예정인원을 초과하여 동순위자 발생 시에는 선발예정인원에 달할 때까지 동순위자를 대상으로 재시험을 실시하여 합격자 결정(공무원임용시험령 제32조 제3항)

ㅇ (불합격 기준) 위원의 과반수가 평정요소 5개 항목중 2개 항목이상을 '하' 로 평정하였거나, 위원의 과반수가 어느하나의 동일한 평정요소에 대하여 '하' 로 평정한 때에는 불합격

ㅇ 면접 시험 대상자는 신분증(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여권 중 택1) 지참한 후 면접 시작 30분 전까지 지정된 면접 대기 장소에 입장하여 안내를 받으시기 바랍니다.

* 응시표는 면접 당일 대기 장소에서 배부

ㅇ 면접이 시작된 이후에는 면접 대기장 입실 불가 및 면접에 응시할 수 없음을 안내드리니, 반드시 면접 시험 시간을 준수하시기 바랍니다.

6. 응시서류 접수

가. 원서접수 : 고용24 홈페이지(www.work24.go.kr)

나. 접수기간 : 2024. 7. 31.(수) ~ 2024. 8. 2.(금) 18:00까지

다. 접수방법

- 고용24 홈페이지(www.work24.go.kr)에서 온라인으로만 접수

※ 온라인 접수시 문의사항은 고용24 콜센터(1577-7114,1544-4430)문의

※ 최종 접수 여부반드시 확인, 확인하지 않아 발생하는 불이익은 응시자 본인에게 있음

라. 구비서류 첨부 : 온라인 접수시 PDF · JPG 파일(성명_서류명) 첨부
또는 등기우편 제출(온라인 첨부가 어려울 경우)

- 접수처 : (54025) 전북 군산시 우체통거리1길 20
군산우체국 지원과 인사 담당자

- 우편제출 시 접수 마감일 우체국 소인분(익일특급 등기우편)까지 인정

- 구비서류를 등기우편으로 제출하더라도 **응시원서는 온라인으로만 접수하여야함**

* 구비서류 등기우편 접수 시 봉투 겉표지에 **『상시계약집배원 응시원서 구비서류 재중』** 표시

※ 응시표는 실기 · 면접시험 당일날 교부(※응시번호는 SMS문자로 송부)

마. 유의사항

ㅇ 응시원서 상의 기재착오 또는 누락이나 연락불능, 합격자 발표 미확인 등으로 인한 불이익은 응시자의 귀책사유가 될수있으므로, 합격자 발표일등 시험일정과 안내사항, 합격여부를 반드시 확인해야 합니다.

ㅇ 제출된 증빙서류(경력,자격등)는 관계기관에 진위를 확인할 예정이며 허위사실 기재또는 위·변조시『국가공무원법』 및 『공무원 임용시험령』에 의거 5년간 국가공무원 시험 응시자격이 정지됩니다.

7. 시험일정 및 합격자 발표

가. 모집공고 : 2024. 7. 26.(금) ~ 8. 2.(금)

나. 응시원서 접수기간 : 2024. 7. 31.(수) ~ 2024. 8. 2.(금) 18:00까지

다. 서류전형 및 합격자 발표 : 2024. 8. 7.(수) / 8. 7.(수)

라. 실기 및 면접시험 : 2024. 8. 14.(수)

마. 최종합격자 발표 : 2024. 8. 19.(월)

바. 서류전형 및 최종합격자 발표 등 모든 시험 일정은 군산우체국 홈페이지, 나라일터, 우정사업본부 집배원채용 안내 홈페이지에 게시

8. 제출서류

가. 응시원서 1부

나. 이력서 1부

다. 자기소개서 1부

라. 운전경력증명서 1부

ㅇ 면허발급 이후 **전체기간의** 운전면허경력, 법규위반, 교통사고 내역이 나타나야 하며, 운전면허경력란에 **면허취득일자는 반드시 표기**되도록 제출

마. 주민등록초본 1부 **(※ 병역사항이 기재되게 발급)**

ㅇ 주소변동 이력 표시 및 **주민등록번호 뒷자리 미포함**하여 발급

ㅇ 초본교부 신청시, 신청내용을 **『전체포함』**으로 선택하여 발급

바. 경력증명서 1부(해당자에 한함)

ㅇ 경력사실 확인이 가능하도록 근무기간, 직위, 직급 및 담당업무를 정확히 기재하고, 발급확인자의 서명(날인) 및 연락처 포함

사. 정보화 관련 자격증 사본 1부(해당자에 한함)

아. 취업지원대상자 증명서 등 우대요건 증빙 서류 1부(해당자에 한함)

자. **「국민체력 100」 인증서(3등급 이상) 1부(해당자에 한함)**

* **국민체력100 체력인증센터에서 체력측정 후 발급하는 인증서(무료)로 인증일이 공고일기준 최근 6개월 이내인 인증서(3등급이상)에 한함**

차. 운전면허증 사본

카. 범죄사실 부존재 확인서 1부

※ 운전면허 경력증명서(1부) 및 주민등록 초본(1부)는 공고일 이후 발급분에 한함
누락(미비사항)이 있는 경우에는 서류전형에서 불합격 처리될 수 있습니다.

※ 증빙자료가 없는 경력, 자격 등은 인정하지 않습니다.

9. 기타사항

가. 본 시험은 사정에 의하여 변경될 수 있으며, 변경이 있을 경우 해당 시험일 3일전까지 군산우체국 홈페이지에 변경 공고

나. 응시원서의 기재사항이나 제출된 서류가 허위로 판명되거나, 최종합격자 통지 후 채용신체검사 등을 통하여 부적격(결격사유)으로 판명될 경우 합격이 취소

다.「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제11조에 따라 최종합격자를 제외한 응시자를 대상으로 기 제출한 채용서류를 반환

ㅇ 최종합격 되지 못한 응시자는 최종합격자 발표일의 다음날로부터 14일 이내에 제출한 서류의 반환을 청구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다만, 홈페이지 또는 전자우편으로 제출된 경우나 응시자가 자발적으로 제출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며, 천재지변이나 그 밖에 군산우체국에게 책임 없는 사유로 채용서류가 멸실된 경우에는 반환한 것으로 봄

ㅇ 채용서류 반환 청구를 하려는 응시자는 채용서류 반환청구서(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지 제3호 서식)를 작성하여 군산우체국 이메일(tax56001820@korea.kr) 또는 등기우편으로 제출하면, 제출이 확인된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지정한 주소지로 등기우편을통하여 발송

ㅇ 응시자의 반환 청구에 대비하여 '24.8.19.(최종합격자 발표일)~2024.9.2.까지 채용서류를 보관하게 되며, 그때까지 채용서류의 반환을 청구하지 아니할 경우에는「개인정보 보호법」에 따라 지체 없이 채용서류 일체를 파기

라. 상시계약집배원은 비공무원이며, 공무직으로 채용되어 정년은 60세까지로 하며 , 최초 3개월간은 수습기간으로 운영됩니다.
수습 중의 보수는 동일하게 지급되나, 업무능력 부족 또는 직무수행 태도 불량 등으로 계속근로가 어렵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근로계약 해지 가능

마. 상시계약집배원 근무경력은 향후 우정직 공무원으로 채용된 경우 유사 경력으로 인정되어 호봉에 반영

바. 접수마감 후 응시인원이 채용예정 인원보다 적거나(응시자가 없을 경우 포함) 같을 경우는 원서접수일, 시험실시일 등을 새로이 정하여 공고할 수 있음

사. 응시원서에는 반드시 연락처(휴대전화, 이메일 등)를 기재하시기 바라며, 응시원서상의 기재착오 또는 누락이나 연락불능으로 인한 불이익은 응시자의 책임

아. 실기시험 실시 중에 발생되는 인적 피해 및 기타 각종 사고는 일체 응시자 책임임을 공지

자. 면접시험은 대면 또는 비대면(영상)으로 실시할수 있으면 자세한 내용은 추후 【서류전형 합격자 및 실기 면접 시행계획】에 공고예정

차. 최종합격자가 채용포기, 결격사유,퇴직 등의 사정으로 결원을 보충할 필요가 있는경우에는 합격자 발표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차 순위로 면접 성적이 우수한 자를 추가합격자로 결정할수 있음

카. 기타 자세한 내용은 군산우체국 지원과(063-440-6232)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ㅇ 본 공고문은 군산우체국 홈페이지(http://koreapost.go.kr/573)
집배원 채용안내 홈페이지(postman.koreapost.go.kr), 고용24(www.work24.go.kr)
나라일터(www.gojobs.go.kr)에서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붙임 1】

응 시 원 서

본인은 군산우체국에서 시행하는 2024년 제8회 상시계약집배원 채용시험에 응시하고자 원서를 제출하며 다음 사항을 서약합니다.

아래 기재사항은 사실과 다름없으며 만일 시험결과에 부당한 영향을 끼칠 목적으로 허위사실을 기재하였을 때에는 관계법령에 의거 당해시험이 정지 또는 무효가 되고 향후 5년간 응시자격이 정지되어도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습니다.

2024년 월 일

군산우체국장귀하

※응시번호		성명	(한글)	㊞
응시직종	상시계약집배원		(한자)	
생년월일	년 월 일			
주 소 (주민등록주소)	(㉾)			
전자우편		응시권역 (근무예정관서)		
전 화		휴대전화		

※응시번호		**응 시 표** ( )채용시험	
응시직종	상시계약집배원	성명	㊞
응시권역 (근무예정관서)			
2024년 월 일 군산우체국장 ㊞			

주 의 사 항

1. 응시표를 받는 즉시 응시번호 기재여부를 확인하여야 합니다.
2. 응시표를 분실하였을 때는 시험시작 1시간 전까지 지원과로 오시면 재교부 받을 수 있습니다.
3. 시험당일은 응시표, 신분증 및 필기도구를 지참하고 시험시작 30분전까지 지정된 좌석에 착석하여야 합니다.**(입실시간을 지키지 않을 경우 시험장 입실 불가)**

보완사항	를(을) 월 일까지 보완하여야 합니다.

◎ **응시원서는 다음 요령에 의하여 빠짐없이 작성하여야 합니다.**

1. 「※응시번호」 : 기재하지 않음

2. 응시직종 : 상시계약집배원

3. 응시권역(근무예정관서) : 군산우체국, 군산대야우체국, 군산산업단지우체국 중 선택 기재
   ※ 중복지원 불가

4. 주소 : 현재 거주하는 곳(우편물 수령 등)을 정확히 기재함

5. 성명 · 생년월일·전자우편·(휴대)전화 : 빠짐없이 정확하게 기재함

6. 제출서류는 응시원서, 이력서, 자기소개서, 운전경력증명서, 경력증명서, 자격증 사본, 국민체력100인증서, 취업지원 대상자 증명서(장애인등록증 또는 장애인 증명서 사본, 북한이탈주민 등록확인서, 국민기초생활수급자 증명서), 주민등록표초본, 운전면허증사본, 범죄사실 부존재 확인서 순으로 편철하여 제출**(스테플러 사용금지)**

※ 면접시험은 실기전형 합격자에 한하여 실시하며,

합격자 공고는 군산우체국 홈페이지, 나라일터 등에 게시합니다.

【붙임 2】

표준이력서 양식

(앞장)

1. 인적사항

지원구분	신입( ) 경력( )	응시권역 (근무예정관서)		접수번호	
성 명	(한글)				
현주소	(주민등록주소)				
연락처	(본인휴대폰) (비상연락처)		전자우편		

2. 교육사항

	교육 과정명	주요내용	기관명	교육기간
직무관련 직업교육				

3. 근무 경력사항 (지원하는 업무와 연관성이 있는 사항 기입)

근무기간	구체적 업종	직위/역할	담당업무	비 고

4. 운전 및 정보화 관련 자격사항 (채용 자격요건 관련 사항은 필히 기재)

자격분류	자격증명	발급기관	취득일자

5. 정보화 등 자격사항 (채용 우대 관련 사항은 필히 기재)

자격분류	자격증명	발급기관	취득일자

※ 자격분류 : 국가공인자격일 경우 '국가공인', 민간공인 자격일 경우 '민간공인'으로 기재

(뒷장)

6. 직무관련 기타 활동

활동구분	소속조직/활동명	활동기간	활동내용

7. 특기사항 (특기사항이 있는 경우 기재)

8. 기타 우대사항

구분	내용	해당여부
지역인재		☐
기능인재(고졸인재)		☐
청년	(청년고용촉진특별법 제5조에 해당할 경우)	☐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취업지원 대상자		☐
「장애인 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에 따른 장애인		☐
「북한 이탈주민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북한이탈주민		☐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기초생활 수급자		☐

9. 운전경력사항 안내

※채용이 확정된 경우 운전경력사항 중 운전면허 취소·정지, 운전사고, 법규위반 사항은 직무와 직접 관련이 있는 사항으로서 위 사항에 대한 정보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
위와 같은 운전경력사항이 있는 경우 채용이 결정되었다고 하더라도 근로계약 체결에 불이익이 있을 수 있으며 채용이 취소될 수 있음을 공지합니다.

1. 위 사항은 사실과 다름이 없음을 확인합니다.
2. 향후 위 기재 사항 중 채용에 영향을 미치는 허위 사실 기재 또는 누락 사항이 발견될 경우 합격자 취소 등 불이익을 받을 수 있음을 인지하고 있음을 확인합니다.

지원일자: **지 원 자:** **(인)**

※ 본인 자필로 작성하며, 기재된 사항이 합격자 발표 이후 계약서 작성 시 제출된 자료와 대사하여 사실과 다른 부분이 발견되거나 허위 작성으로 확인되는 경우에는 합격이 취소될 수 있습니다.
※ 응시자 부주의로 누락 또는 잘못 기재되거나 표기되어 발생하는 불이익은 응시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붙임 3】

자 기 소 개 서

성 명		응시직종	상시계약집배원
생년월일	. . .	응시권역 (근무예정관서)	

지 원 동 기
생활신조와 가치관
본인의 장.단점
주요경력 및 특기사항
만일 우정사업 종사 근로자로 근무하게 된다면

※ 직무와 무관한 사생활정보, 민감정보(사상, 신념(종교) 등)는 기재하지 않습니다. 응시자의 부주의로 기재되어 발생하는 불이익은 응시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2024 . . . 작 성 자 : (서명 또는 印)

【붙임 4】

체력검사 기준표

구 분		가	부
검사종목	기준시간		
윗몸 일으키기	1분	27개 이상	26개 이하
팔굽혀 펴기	1분	19개 이상	18개 이하
소포상자이동하기	30초	우편물 배달 업무의 원활한 수행 가능	우편물 배달 업무의 원활한 수행 불가능

※ 평가종목 3가지 모두 '가'로 판정 시 실기시험에 합격 처리

실기시험 방법

종 목	측정방법
윗몸 일으키기	- 시험관의 "준비" 구령에 따라, 똑바로 누운 상태에서 다리를 30cm 간격으로 벌리고 무릎은 직각으로 굽혀 세우고 두손은 머리 뒤로 깍지껴 잡는다. - 시험관의 "시작" 구령과 함께 복근력만을 이용 몸을 위로 일으켜 굽힌다. - 양 팔꿈치가 무릎에 닿으면 다시 누운 상태로 돌아간다. - 누운 자세에서는 깍지 낀 양손, 어깨 등이 반드시 메트와 접촉되어야만 한다. - 1분 동안 정확하게 실시한 횟수만 기록한다. * 부정확한 동작 : 깍지를 풀거나, 팔꿈치가 무릎에 닿지 않는 등의 경우는 횟수에서 제외함
팔굽혀 펴기	[남 자] - 시험관의 "준비" 구령에 따라, 양손을 어깨넓이로 벌려 30cm 높이의 봉을 손끝이 앞으로 가도록 잡고 양발을 모아붙인 자세에서 팔이 지면에 대하여 직각이 되도록 하고, 머리, 어깨, 허리, 엉덩이, 다리 등이 일직선이 되도록 한다. - 시험관의 "시작" 구령과 함께 팔이 90도이상 굽혀 가슴이 봉에 닿을 정도까지 굽혔다가 다시 완전히 편 상태를 1회로 간주한다. - 1분 동안 정확하게 실시한 횟수만 기록한다. [여 자] - 시험관의 "준비" 구령에 따라, 양팔을 어깨넓이로 벌리고 무릎을 마루에 대고 엎드려 30cm 높이의 봉을 손으로 짚어 팔을 봉과 직각이 되도록 하고, 머리, 어깨, 허리 엉덩이가 일직선이 되도록 한다. - 시험관의 "시작" 구령과 함께 팔이 90도이상 굽혀 가슴이 봉에 닿을 정도까지 굽혔다가 다시 완전히 편 상태를 1회로 간주한다. - 1분 동안 정확하게 실시한 횟수만 기록한다.
소포상자 이동하기	- 시험관의 "준비" 구령에 따라, 출발선의 소포상자 앞에 선다. - 시험관의 "시작" 구령과 함께 두 팔로 20kg 상당의 소포상자를 들고 빠른 걸음으로 10m를 이동 후 지정된 장소에 내려놓는다. - 도착 장소에 준비된 20kg 상당의 소포상자를 어깨에 메고 빠른 걸음으로 반대편으로 10m를 이동한 후 지정된 장소에 내려놓는다. - 30초 이내에 완료하여야 한다. * 몸놀림과 소포 취급 태도를 통해 소포 등 우편물 취급의 가부 여부를 판단

【붙임 5】

체력검정 응시 동의서약서

1. 응시자는 반드시 본인의 건강상태를 고려하여 체력검정에 응시하시기 바랍니다.

2. 응시자는 반드시 의료기관 등의 진료를 통해 체력검정에 무리가 없는지 확인하고 응시여부를 결정해야 합니다.

3. 체력검정 중 응시자의 과실이나 부주의에 의한 사고, 부상 등은 응급조치 이외의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4. 응시자는 체력검정 도중 이상을 느낄 경우 즉시 체력검정을 중지하시기 바랍니다.

본인은 상기 사항을 충분히 숙지하여, 군산우체국에서 실시하는 상시계약집배원 채용 체력검정 규칙을 엄수하고 시험관의 지시에 순응하며 검정 중에 발생한 본인의 신체상의 사고에 대해서는 일체 본인이 그 책임을 부담할 것을 동의합니다.

2024. . .

생년월일 :

성 명 : (서명)

【붙임 6】

범죄사실 부존재 확인서

성명 :

생년월일 :

주소 :

상기 본인은 본인에 대한 범죄경력 자료를 직접 조회·열람하였으며, 조회 결과 채용공고 혹은 우정사업본부 공무직 및 기간제 근로자 관리규정 제23조(자격요건) 2항에 위배되는 범죄경력이 없음을 확인합니다.

향후, 이 같은 내용이 사실이 아닐 경우, 근무 기간과 관계없이 채용 및 근로계약이 취소될 수 있음을 서약합니다.

2024 년 월 일

성명 : _____(서명)

※ **(범죄경력 자료 조회·열람 방법)** 본인에 한하여 범죄경력회보서발급시스템(http://crims.police.go.kr)에서 공인인증서 로그인 혹은 휴대폰 인증 후 확인 가능

※※ **(관리규정 제23조(자격요건) 2항)**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근로자가 될 수 없다.

1. 국가공무원법 제33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2. 우정사업조직에서 근무한 경력이 있는 자로서, 우편관계법령 또는 계약사항에 위반하여 계약이 해지된 날로부터 3년이 경과하지 아니한 자

【붙임 7】

경 력 증 명 서

제 2024 - 호

인적사항	성 명	한 글		생년월일		
		한 자				
	주 소					
경력사항	근 무 기 간		직 급	근무부서 및 직 위		
근무년한	년 월		최종직위 또는 직급			
퇴직사유						
상벌사항	포 상			징 계		
	년 월 일	종 류	시행청	년 월 일	종 류	처분청
직위해제	년 월 일		사 유	처 분 청		
용 도	상시계약집배원 채용시험 응시 제출용					

위와 같이 경력을 증명합니다.

2024 년 월 일

기관명(회사명) (인)

작성담당부서	
작 성 책 임 자	
작 성 담 당 자	
연락전화번호	

※ 해당 기관(회사)에서 발급하는 소정의 경력증명서가 없는 경우에는 이 양식을 사용하여야 합니다.
※ 기재된 사항이 사실과 다르거나 허위로 작성되어 발생하는 불이익은 응시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붙임8】

■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별지 제3호서식]

채용서류 반환청구서

접수번호		접수일자
청구인	성명	수험번호
주 소		
반환장소 (주소와 다른 경우 기재)		
반환청구서류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1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조 및 제4조에 따라 위와 같이 채용서류의 반환을 청구합니다.

2024 년 월 일

청구인 (서명 또는 인)

군산우체국장 귀하

공지사항

1.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제1항에 따라 신청인이 채용서류의 반환을 요청하면 해당 사업장은 14일 이내에 반환요구서류를 발송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2.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제2항에 따라 반환요구서류는 특수취급우편물을 통해 전달받거나, 사업장으로부터 직접 전달받을 수 있습니다.
3.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11조제5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조제2항에 따라 채용서류의 반환에 드는 비용을 청구인이 부담할 수 있습니다.

210mm×297mm[일반용지 60g/㎡(재활용품)]